

개인 정보 열람 통 지 서

수신자 (우편번호: 주소:)

관련 열람 요구서	☐ 접수번호 :
	☐ 요구내용 :

통지 내용			
열람	일부열람	열람연기	열람거절
※ 열람 형태 및 방법, 수수료 또는 우송료(산정 명세 포함), 열람일자 및 장소 등을 기재합니다.	※ 일부열람 사유와 함께 열람 형태 및 방법, 수수료 또는 우송료(산정 명세 포함), 열람일자 및 장소 등을 기재합니다.	※ 열람연기 사유를 기재합니다.	※ 열람거절 사유를 기재합니다.

이의제기방법	
※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.	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과 「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」 제7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발 신 명 의 직 인

유의사항
1. 개인정보 열람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, 요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 가. 요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 : 요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 등) 나. 요구인의 대리인에게 공개할 때 :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2. 수수료 및 우송료는 각각 수입인지 및 등기우표를 제출하거나 상당금액을 헌법재판소사무처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,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납부토록 할 수 있습니다.
3. 열람 요구에 대해 일부열람 · 열람연기 · 열람거절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'이의제기방법'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.